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양돈법률상담코너'에 게시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



김태욱 변호사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관한 문의

Q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25%는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존 농업회사법인이 25%를 출자하고, 일반회사가 75%를 출자하여 새로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농업인의 기준은

“1.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시행령 제3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기존 농업회사법인이 새로운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참여함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재로 인한 보상에 대한 문의

Q 젓편 돼지를 인큐베이터에서 사육하는 도중 누전차단기의 부작용으로 인해 화재가 났습니다. 인큐베이터 제조 업체는 처음 설치할때 전기 전력량을 조사한후 정확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않은것으로 보아 설치시 제조업체의 과실인것 같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돼지가 모두 폐사하였고 시설비 또한 만만치 않게 들었는데 복구가 힘들것 같습니다. 인큐베이터 제조 업체의 과실을 인정받고 보상을 받으려 하여 문의 드립니다.

A 인큐베이터 제조 업체의 과실인지 누전차단기의 부작용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인큐베이터와 누전차단기 제조업체 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연대책임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 화재가 일어난 경우, 손해액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돈사 임대건에 관한 문의

Q 임대계약기간을 4년으로 정하였지만... 일년이 지난후 여름만되면 산에서 물이 내려와 돈사에 물이 넘쳐흐릅니다. 그래서 농장주인에게 도저히 운영이 힘들다고 하자 다른 농장이 구해지는데로 나가겠다고 주인과 합의를 봤고 주인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돈을 구했다고 나가겠다고하자 주인은 그러면 곤란하다며 임대할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아니면 임대할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데 지불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약정에 따라야 하므로 임대차기간 도중에 귀하가 농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동안의 월세는 임대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여름에 빗물로 인해 농장 운영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면 임대차기간 중에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일 두 달 전에 귀하가 다른 농장을 구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귀하에게 반환하여 준다고 합의하였다면, 이는 문서로 근거를 남겨야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축돈 및 폐사돈에 해부에 관한 문의

Q 월 폐사율이 6~8%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 합니다. 돈사에서 사육 도중 죽어가는 돼지와 죽은 돼지를 해부해 원인을 알고자 하는데 현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축산법 등의 법의 저축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병명이 불분명하거나 질병으로 죽은 가축,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그 가축의 소유자 등과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 등은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 가축의 살처분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그리고 동물에 사체에 대한 검안은 수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의사법). 따라서 귀하가 죽어가는 돼지나 죽은 돼지를 임의로 해부한다면 위와 같이 법을 저촉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관청에 신고 또는 수의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설마하는 방심속에 멀어지는 선진양돈